

'88사회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88. 5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목 차

I. 조 사 개 요	1
1. 조 사 연 혁	1
2. 조 사 목 적	1
3. 조 사 항 목	1
4. 조 사 대 상	2
5. 조 사 기 간	3
6. 조 사 방 법	3
II. 일반적인 유의사항	4
III. 조사표 작성 요령	5
IV. 조사표 검토 요령	22
V. 조사표 제출 요령	27

I.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 (UN 통계위원회 17차 회의 의견, 1972) 의 권고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을 받아 1975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KDI) 과 공동으로 사회경제지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350개 지표를 체계화 하였다.

이들 지표 중 기존자료로 작성할 수 없는 지표, 즉 주관적 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최초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금년이 12번째 조사로 1987년 현재 총 224개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조사목적

이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작성을 위한 부문별 지표의 시계열 보완과 주요관심부문의 지표를 추가 작성함으로써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식을 파악함은 물론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항목 (28개 항목)

- 가. 인적사항 및 활동상태 10개
- 나. 사회부문 8개

- 노후생활 태도
-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 노후준비 방법
- 계층의식
- 계층이동

다. 공 안 4개

- 범죄피해
- 안녕감
- 준법수준

라. 고용·노사 6개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직장에서의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 상태 및 불만 이유
- 직업선택 요인
-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및 취업사유

4.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자

사회통계조사의 조사대상자는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인구로, 조사기간 중 실제 조사가 가능한 가구원을 모두 조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제외되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직업군인, 방위병 등도 여기서는 포

함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현역군인(출퇴근하는 직업군인과 방위병 제외), 전투경찰, 형
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해외상주취업(학)자, 기타
장기출타자

5. 조사기간

1988.5.25 ~ 6.3 (10일간)

6. 조사방법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 병용

II. 일반적인 유의사항

- * 조사요원은 조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사요원의 충실한 업무수행은 조사의 신뢰도, 타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1. 조사표는 조사기간 이전에 대상자수에 따라 조사가구에 배부한다.
-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 개인의 의식조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회통계조사와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예, 방위병, 직업군인 포함)
- 3. 15세미만의 가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관리항목만 작성한다.
- 4. 해당없는 문항은 모두 사선(좌상단-우하단)처리한다.
- 5. 응답항목은 반드시 하나만 ○표 하여야 한다.
- 6. 조사요령서를 충분히 숙지, 설문취지에 부합되는 조사를 하여 조사자 편익(interviewer bias)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 7. 조사표 회수시 기입누락, 문항별 조사대상자 착오여부, 각란간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 작성요령

1. 관리사항

-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 가구번호는 가구표에 부여된 번호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당 매수는 일련번호의 맨 마지막 번호와 일치하게 기입한다.

2. 가구원사항

- 총가구원 - 0 세이상의 총가구원수를 기입한다.
- 대상가구원 - 15 세이상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출퇴근 하는 직업군인과 방위병 포함)
- 제외가구원 - 15 세 미만 가구원수를 모두 기입한다.
- 가구구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되, 농가의 정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다.

3. 조사사항

가. 기본사항

- 인적사항, 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나. 항목별 조사사항

1) 노후생활 태도(11란, 12란)

가) 11란

* 이란은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생계책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관심이나 태도 등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1. 장남

아들이 2명이상일 경우 장남이 부모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

2. 아들

장남, 차남 구별없이 자녀중 아들이 부모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

3. 딸

딸이 부모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

4. 아들, 딸 모두

아들, 딸 상관없이 자식 모두가 부모의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

5. 자립

자식에게 위탁하지 말고 부모 스스로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

6. 사회(국가)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책

입적야 한다는 경우

나) 12란

이란은 11란의 노부모의 생계책임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응답자가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응답자의 희망을 조사한다.

2) 노후준비 방법 (13란)

* 이란은 노후생계 대책에 대한 준비여부 및 준비방법을 파악, 노후생활에 대한 일반적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가)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기반이 갖추어진 사람을 모두 포함 조사한다.

1. 보험

여기서 보험이란 노후생활을 위해서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기타 목적의 보험은 제외한다.

2. 적금

적금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있겠으나 반드시 노후생활을 위해서 들었을 경우만 해당된다.

3. 연금, 퇴직금

연금은 국민복지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과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4. 부동산 운용

부동산 소유자를 모두 노후준비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되고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운영(임대수입,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노후생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운용”으로 조사한다.

5. 유가증권 운용

각종 채권, 증권등을 노후생활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계

계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노후생활을 위해 계를 불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3)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14 란)

1. 신체·건강 및 용모

신체불구, 건강, 용모 등으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 가정

결손가정, 가족간의 갈등,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등 가정상의 문제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3. 학업

학업성적, 진학문제, 적성, 학업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4. 직업

직업청소년의 직장관련문제, 졸업후의 직업선택의 문제 등 직업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5. 이성교제

주로 이성문제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6. 기타

교우간의 문제 등 기타

4) 계층의식 (15 란)

여기서 계층이란 소득, 교육, 직업, 재산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문제 (예, 소득)에 국한해서 계층을 조사담당자가 판단 조사하여서는 안되고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5) 계층이동 (16 란, 17 란)

가) 16 란

- “ 부모대의 계층과 비교하여 자식대에서의 계층이동의 가능성 ”이란 우리사회에서 세대간 계층이동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계층이동이란 단순히 사회경제발전에 기인한 물질

적 생활수준향상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세대간의 상대적인 계층의 변화상태를 의미한다.

- 부모, 자식간의 비교 개념은 응답자 본인에 국한된 경험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가능성의 정도를 조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구주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대의 계층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나) 17 란

우리사회에서 한사람이 일생동안 노력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개방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에 국한하여 조사해서는 안되고 사회전반적인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직업선택 요인 (18 란)

- * 이란은 현재의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1. 명성·명예

명성·명예를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 안정성

안정성이란 신분보장이 확실하고 경기침체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고용인력 조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직장(업)을 선택하는 경우

3. 수 입

소득이나 수입을 최우선적인 선택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

4. 보 랫

보람이란 그일을 함으로서 국가나 사회에 이익을 주
고 또 일을 통해서 일의 보람, 즉 자아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

5. 발전성

발전성이란 그 직장이나 직업의 장래발전성을 우선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7) 안녕감 (19 란)

이란은 개인이 범죄피해를 입는데 대한 두려움으로 과
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 TV 등 메스콤의 영향으로 인한 막연한 느
낌은 제외되어야 한다.

8) 준법수준 (20 란, 21 란)

20 란 타인평가 준법수준과 21 란 자기평가 준법수준으
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법”이란 공공질서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법”개

범으로 조사한다.

9) 범죄피해 (22 란)

가) 일반적인 조사기준

- (1) 범죄피해건수는 '87.5.1 ~ '88. 4.30 (1년간) 까지
에 발생했던 것만 조사하여야 하며 그외의 기간에
발생한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2) 범죄피해의 범주는 응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이 경험한 피해도 모두 포함하며 주택내외
를 불문하고 직장, 가게 등에서의 범죄피해를 모두
조사한다.
- (3) 범죄의 종류는 강도, 절도, 소매치기, 폭행·상해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이외의 범죄는 조
사에서 제외한다.
 - 강도 : 강도는 재물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
도와 유사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다
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절도 : 폭행이나 협박없이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탈취당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자동차 절도등
을 포함하고 소매치기는 제외한다.
 - 소매치기 : 절도에 포함되나 들치기, 날치기 등과
함께 별도 조사한다.
 - 폭행·상해 : 신체에 가해를 당한 경우 신체의 부

상 유무 및 정도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피해정도는 신체피해 “있다”, “없다”로만 분류하여 조사한다.

- (4) 범죄피해를 당한후 범인을 붙잡아 범죄피해를 해결한 경우도 “범죄피해를 당한적이 있다”에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5) “당했다”와 “당할 뻔했다”의 구별 기준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조사한다.
- (6) 해당 번호에 ○표시 한다.

나) 범죄피해 내용

○ 당한 적이 있다.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강도의 경우는 재산피해, 신체피해의 유무 및 건수를 조사한다.
- 재산피해액은 천원단위로 조사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피해액은 응답자의 피해액 추정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또 전체 범죄피해 건수중 미신고된 범죄피해 건수를 조사하고, 조사표에 예시된 미신고 이유중 해당번호를 해당건수에 맞게 각각 기입한다.

○ 당할 뻔했다.

- 범죄피해의 위협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직접적인 범죄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범죄로부터의 위기를 느낀 경우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 “당할 뻔했다”라고 응답한 경우
- “당할 뻔했다”의 경우는 범죄 미신고 건수와 이유는 조사하지 않는다.

다) 미신고 이유

범죄피해 미신고 건수별로 미신고 이유도 모두 기입한다.

따라서 미신고 건과 미신고 이유의 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 1. 미신고 건수가 2건이고, 그 사유가 각각 1, 2인 경우

131. 미신고 이유 (1, 2)

2. 미신고 건수가 3건이고, 그 사유가 모두 1인 경우

131. 미신고 이유 (1,1,1)

1. 피해가 없거나 크지 않아서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전혀 없거나 피해규모가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신고해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직·간접 경험에 의해서 신고해도 범인의 체포, 피해보상 등의 성과가 기대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신고하면 귀찮아서

신고로 인한 절차상의 복잡, 신고처 왕래의 번거로움, 시간적 손실등을 고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명예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신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체면손상이 우려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집안식구나 이웃이 협력하여 해결했기 때문에

집안식구나 이웃이 협력하여 범인을 잡았거나 피해보상을 받아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기 타

범죄피해 미발견, 부정물자, 유실로 착각한 경우 등

10)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23 란)

* 개인의 경험이 아닌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취업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한다.

1. 가정일에만 전념

결혼, 자녀의 양육등과 상관없이 여자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가정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경우

2. 결혼전까지만

결혼전까지만 직업에 종사하고 결혼후에는 가정일에
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자녀가 성장한 후

결혼전은 물론 결혼후도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할때
까지는 가정일과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성장후에 직
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4. 출산전과 자녀성장후

자녀출산전과 자녀성장후에만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는 경우

5. 가정일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가정일과 자녀양육 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혼생활과 관계없이 여성도 직업을 갖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는 경우

11) 여성취업 사유 (24 란)

* 이란은 여성취업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취업자는 경
제활동 취업자개념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당 18 시간이
상 무급 가족 종사자도 조사한다.

1.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본인이 취업하지 않으면 가구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2.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구의 주수입원은 있으나 여성이 취업을 하여 가계생계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는 경우
3. 자기집일(사업)을 돕기 위해
취업의 궁극적인 동기가 가계보탬보다는 자기집의 사업이나 농사일등 자기집일을 돕고자 하여 취업한 경우
4.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의 동기가 다른 이유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 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5.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
취업의 동기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경험을 얻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6. 남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의 동기가 무리한 시간활용, 여가활용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7.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취업의 동기가 국가사회발전을 위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8. 기 타
앞에서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말하며 ()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입한다.

12) 가정생활 만족도 (25 란)

* 이란의 조사취지는 현재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속에서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1. 경제적인 생활 형편

○ 소득, 재산등 가정내의 경제적 측면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경제적인 생활형편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준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요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 조사한다.

○ 경제적인 생활형편의 만족도는 “해당없음”에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2. 자녀와의 관계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에 표시한다.

3. 부모와의 관계

○ 전통적 사고방식과 요즈음의 부부중심 가족관 사이의 갈등,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과 가족공동체적 생활방식과의 갈등,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 등을 포함 조사한다.

○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없음”에

표시하고, 장인, 장모는 응답자가 장인, 장모를 부모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한다.

4. 배우자와의 관계

- 부부관계에서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표시하고, 배우자와 별거중일 때에는 조사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가정생활

위의 네가지 사항 외에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한다.

13)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26 란)

- * 임금근로자는 종사상지위,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한다.

가. 하시는 일

일의 내용, 양, 성격 등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나. 임금·급여

임금·급여액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조사하지 말고 일과 비교하여 그 댓가로서 받는 상대적인 임금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임금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근로시간 자체만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한다.

라. 직장에서의 장래성

현재보다는 승진기회, 임금, 후생 등 직장 장래성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마. 작업환경 (안전, 위생 등)

작업환경의 안전, 위생, 직장 및 사무실의 공간적 환경 등에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바. 인간관계

상하간, 동료간의 인간적 관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14)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 (27 란)

- 직원 (관공서, 학교, 은행, 군대, 회사 등)에 관한 인사 관리 및 노무관리 등 소속직장의 전반적인 인사, 노무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여기서 인사, 노무관리란 인사관리 (승진, 고과, 배치, 이동 등), 인간관계 관리 (복지후생, 의사소통, 경영참가), 임금, 직장환경, 안전, 위생, 복지시설,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15)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상태에 대한 불만 이유 (28 란)

27 란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에 조사된 자에 한

해서 불만 이유를 조사한다.

1. 인사배치

직원선발, 인사배치, 인사이동 등에 있어서 불만인 경우

2. 승진, 승급

승진, 승급, 고과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

3. 임 금

저임금, 임금구조, 체불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

4. 근로시간

장시간노동, 격일제근무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

5. 작업환경(안전, 위생 등)

직장의 공간적 환경, 안전, 위생 등 직장(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

6. 복지시설 및 후생

직장의 복지시설, 후생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

7. 인간적 차별대우

관리직과 생산직 사이의 인간적 갈등, 비인간적 대우
에서 오는 인간적 차별등의 불만을 느끼는 경우

8. 기 타

취업규칙, 퇴직관리, 노사관계 등

Ⅳ. 조사표 검토요령

* 조사요원은 조사표 회수 및 내검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된 사항은 응답자에게 직접 재방문 조사하여 보완한다.

1.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 누락여부 확인 및 가구주, 가구원 조사사항, 여성취업자 조사사항, 임금근로자, 기혼자 조사사항 등이 명확히 구분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2. 조사표 사항

가. 기본사항

인적사항,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란의 내용이 가구표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항목별 조사사항

1) 노후생활 태도

- 11란은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로 응답하지 않고 응답자 자신의 처지에서 응답하였는지 확인한다.
- 12란은 11란과 달리 응답자 자신의 희망을 질문하는 항목으로서, 응답자 자신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타에 응답하는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노후준비 방법

- “준비하고 있지 않다”로 표시하고 준비방법이 조사된 경우와 “준비하고 있다”로 표시되었는데, 준비방법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준비하고 있지 않다”로 조사된 경우 이미 노후생활 준비기간이 갖추어진 사람일 때에는 “준비하고 있다”로 조사하고 준비 방법을 확인하여 조사한다.
- 준비 방법을 두가지 이상으로 표시한 경우 주된 준비 방법을 확인하여 하나만 ○표 하도록 한다.

3)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두군데이상 표시되었는지 검토하고 기타에 표시된 경우에는 ()에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층의식

조사된 계층의식이 조사담당자의 판단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층의식의 판단기준이 특정부문(예, 소득, 교육수준 등)에 편중하여 잘못 응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계층이동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쪽(1, 2 응답항목) 또는 낮은 쪽(4, 5 응답항목)에 응답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전반의 여건에 관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으로 조사되지 않고 개인에 국한된 가능성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6) 직업선택 요인

두군데 이상 표시되었는지 검토하고 기타에 표시된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7) 안녕감

1. “매우 많이 느낀다”와 2. “약간 느낀다”에 응답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해서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과 관련없는 막연한 심리적 두려움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8) 범죄피해

- 범죄피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당할 뻔했다”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 범죄피해 조사대상기간 외의 범죄피해 건수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당한적이 있다”의 경우 재산피해, 신체피해 건수 및 피해액조사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 미신고 건수에 대한 미신고 이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결혼, 출산, 자녀성장 등의 기간 개념을 응답자가 이해

하고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한다.

10) 여성취업 사유

- 두군데이상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기타에 그 사유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여성취업자 외의 대상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11) 가정생활 만족도

- 기혼자의 의 미혼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혼자중 자녀가 없는 경우와 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각각 “해당없음”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반적인 가정생활 만족도와 가족구성원간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내용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한다.

12)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취업자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13) 전반적인 노무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

26 란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내용과 상호연관성을 확인한다.

14)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 이유

- 27 란 전반적 노무관리에 대한 만족도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에 조사된 자 이외의 응답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두군데이상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기타에 조사된 경우 그 내용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V. 조사표 제출 요령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편철한다.
- 15 세이하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조사표와 불응가구 조사표는 사무소 단위로 별도 편철한다.

1. 조사표 표지 작성

조사지역,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총가구수, 불응가구수, 조사 가구수 등을 작성하여 관리계장 담당주임의 확인을 받는다.

2. 조사표 편철요령

가구번호 순서별 가구주조사표, 가구원조사표 순으로 편철 제출한다.

3. 조사표 제출

1988.6.18